

<수시공시>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운용인력 공시관련 변경]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9조1항에 의거하여 투자운용인력 변경에 대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 대상투자신탁 :

펀드명	변경 전		변경 후
	책임	부책임	단독운용역 (기존 책임운용인력)
미국중소형주H(주식-재)	장정주	김낙균	장정주
브릭스자A-1(주식)	김영민	장정주	김영민
아시아 에셋 인컴 (주혼-재)	장정주	김낙균	장정주
월지급 아시아 에셋 인컴 (주혼-재)	장정주	김낙균	장정주
글로벌멀티에셋인컴(채혼-재)	장정주	김낙균	장정주
월지급글로벌멀티에셋인컴(채혼-재)	장정주	김낙균	장정주
유로모(주식)	장정주	김영민	장정주
유로밸런스드자A(채혼)	장정주	김영민	장정주
유로자A(주식)	장정주	김영민	장정주
차이나그로스모(주식)	장정주	김영민	장정주
차이나그로스자A(주식)	장정주	김영민	장정주
차이나밸런스드자A(채혼)	장정주	김영민	장정주
코리아모(채권)	김낙균	장정주	김낙균
코리아자E(채권)	김낙균	장정주	김낙균

□ 변 경 : 운용 체제 변경에 따른 운용인력 공시 기준 변경

- 운용 체제 변경: 상기 투자신탁의 운용 체제를 팀 공동운용 체제에서 **단독운용 체제로 변경**
- 공시 기준 변경: 이에 따라 상기 투자신탁의 운용인력 공시 기준도 기존의 책임/부책임 운용인력을 병기하는 방식에서 **해당 운용인력[기존 책임운용인력]만을 공시하는 방식으로 공시 기준 변경**
- 부책임운용인력: 상기 투자신탁의 운용인력에서 **기존의 부책임운용인력은 말소 처리**

□ 변경 기준일 : 2014년 6월 10일

